



## 스위스의 부패방지 법제

정보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신고심사단

### I. 서론

스위스는 부패방지를 위해 대·내외적인 장치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부패에 대한 조치에 스위스가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OECD에서 결의한 1997년의 부패방지협약국제적인 협력<sup>1)</sup>에 가입하고 부패담당 OECD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유럽연합참사회에서 1999년에 결의한 부패방지를 위한 형법협약<sup>2)</sup>에 가입 및 이에 동반하는 GRECO<sup>3)</sup>에도 가입을 하였다. 셋째, UNO 부패협약<sup>4)</sup>에 대한 서명을 하였다.

국내적 부패방지 장치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입자를 위해서는 스위스연방형법상의 규정인 부패처벌법인데 2000년과 2006년에 사이에 스위스는 동법을 통하여 부패에 관하여 3개의 범주를 구성하였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특히 외교관들의 부패에 대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다. 사인이 행하는 부패에 대해서는 연방부당경쟁법이 규율하고 있다. 동 법이 갖는 새로운 점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사업장(Unternehmen)도 부패로 인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스위스의 부패에 대한 법들과 유럽연합 내에서의 스위스 부패방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Konvention zur Bekämpfung der Bestechung auslaendischer Amtstreger im internationalen Geschaeftsverkehr von 1997.
- 2) Strafrechtskonvention zur Korruptionsbekämpfung von Europaischem Rat 1999.
- 3) Groupe d'Etats contre la corruption, 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 Staatengruppe gegen Korruption(부패방지국가그룹). 유럽위원회는 GRECO안에서 부패척결컨셉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회원국들 상호간에 부패에 관련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http://www.coe.int/t/dc/files/themes/greco/default\\_DE.asp](http://www.coe.int/t/dc/files/themes/greco/default_DE.asp).
- 4) UNO-Konvention gegen Korruption. 이는 2003년에 100개국 이상이 서명을 하여 2005년부터 발효중이다. 스위스는 현재 비준을 위한 작업 중이다. 동 협약이 OECD 및 GRECO 부패방지협약과 다른 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점과 뇌물로 획득한 돈의 반환청구결정에 있다. <http://www.seco.admin.ch/themen/00645/00657/00658/index.html?lang=de>.

## II. 부패관련 법률

### 1. 형법상의 규정: 소위 부패처벌법(Korruptionsstrafrecht)

스위스 형법의 제19장은 제322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공무원의 매수에 관한 것으로 부패처벌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

- Art. 322ter: 매수(Bestechung)
- Art. 322quater: 소극적 매수(sich bestechenlassen)
- Art. 322quinquies: 이익보장(Vorteilsgewährung)
- Art. 322sexies: 이익수령(Vorteilsannahme)
- Art. 322septies: 외국 공무원담임자의 매수 (Bestechung fremder Amtstraeger)
- Art. 322octies: 공동규정(gemeinsame Bestimmungen)

위 조문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공무원담임자 매수(Amtstraegerbestechung)

- 스위스 공무원담임자의 매수: Art. 322ter StGB (Stafgesetzbuch)

법원 및 다른 공공기관의 구성원, 공무원, 공적으로 요청된 전문가, 번역가 및 통역가 재판조정관, 군인 관계자에게 그들의 관리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 위반적이거나 재량에 속한 작위 및 부작위에 대

해 적합하지 않은(nicht gebuehrend)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외국 공무원담임자의 매수: Art. 322septies StGB

외국이나 국제기관에서 활동하는 법원 및 다른 공공기관의 구성원, 공무원, 공적으로 요청된 전문가, 번역가 및 통역가 재판조정관, 군인 관계자에게 그들의 관리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 위반적이거나 재량에 속한 작위 및 부작위에 속한 행위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nicht gebuehrend) 장점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사람과 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법원 및 다른 공공기관의 구성원, 공무원, 공적으로 요청된 전문가, 번역가 및 통역가 재판조정관, 군인 관계자로서 그들의 관리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 위반적이거나 재량에 속한 작위 및 부작위에 속한 행위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nicht gebuehrend) 이익을 요청하거나, 약속하게하거나 또는 이를 수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익의 보장(Vorteilgewährung): Art. 322quinquies StGB

법원 및 다른 공공기관의 구성원, 공무원, 공적으로 요청된 전문가, 번역가 및 통역가 재판조정관, 군인 관계자에게 직무수행(Amtsfuehrung)의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은(nicht gebuehrend) 이

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 (2) 적극적 및 소극적 매수(Aktive und passive Bestechung)

- Art. 322ter StGB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자의 적극적 매수란 그들의 관리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 위반적이거나 재량에 속한 작위 및 부작위에 속한 행위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nicht gebuehrend)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행위이다.

- Art. 322quater StGB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자의 소극적 매수란 그들의 관리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 위반적이거나 재량에 속한 작위 및 부작위에 속한 행위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nicht gebuehrend) 이익을 요청하거나, 약속하게거나 또는 이를 수령하는 사람이 범한 것이다.

### (3) 매수와 이익보장/이익수령(Bestechung und Vorteilsgewahrung/-annahme)

이는 매수에 있어서 공동사항으로 Art. 322octies StGB에서 정하고 있다.

- 매수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장점(nicht gebuehrende Vorteil)”이란 구체적인 작위나 부작위를 나타낸다. 이때에는 교환관계가 존재한다.

- 이익의 보장과 이익의 수령은 허용되지 않는 이익인 “선물(Geschenke)”을 말한다. 이는 공무원자에게 있어서 그의 어떤 특별한 공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공직수행과 관련하여 보장되거나 수령된 것이다. 이는 단지 스위스 공무원자에게만 해당한다.

## 2. 연방부당경쟁법(Bundesgesetz ueber den unlauteren Wettbewerb)의 규정

### (1) 사인의 매수(Privatbestechung): Art. 4a UWG(Bundesgesetz ueber den unlauteren Wettbewerb)

부당행위를 한 자란 다음과 같다:

a. 고용인, 조합원(Gesellschafter), 업무수탁인(Beauftragter), 사적영역에서 제3자의 보조인(Hilfsperson)에게 그의 업무상 및 사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 위반적이거나 재량에 속한 작위 및 부작위에 속한 행위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nicht gebuehrend)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다.

b. 고용인, 조합원(Gesellschafter), 업무수탁인(Beauftragter), 사적영역에서 제3자의 보조인(Hilfsperson)으로서 그의 업무상 및 사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 위반적이거나 재량에 속한 작위 및 부작위에 속한 행위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nicht gebuehrend) 이익을 요청하거나, 약속하게거나 또는 이를 수령하는 자이다.

### (2) 적극적 및 소극적 매수(Aktive und passive Bestechung)

- Art. 4a Abs. 1 Buchstabe a UWG에서의 사인의 적극적 매수란 그들의 관리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 위반적이거나 재량에 속한 작위 및 부작위에 속한 행위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nicht gebuehrend)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행위이다.

- Art. 4a Abs. 1 Buchstabe b UWG상의 사인의 소극적 매수란 그들의 관리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 위반적이거나 재량에 속한 작위 및 부작위에 속한 행위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nicht gebuehrend) 이익을 요청하거나, 약속하게거나 또는 이를 수령하는 사람이 법한 것이다.

### (3) 부당경쟁(Art. 23 UWG)

1. 고의로 Art. 3, 4, 4a, 5 oder 6을 범한 사람은 고소에 의해 자유형에 처해지거나 최고 100,000Franken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 고소는 Art. 9, 10상의 민법상의 소제기(Zivilklage)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 3. 형법적 책임(Strafrechtliche Haftbarkeit)

- Art.102 StGB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형법 제6장은 제102조에 매수와 관련된 사업자의 처벌을 정하고 있다(최고 3년형, 또는 벌금형). 부패에 대해서는 우선 자연인을 처벌하지만 동조의 각호 2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매수에서 만일 사업장에 대하여 그러한 매수의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요구되고도 기대되는 조직적인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이 될 수 있으면, 사업장이 자연인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규정상의 사업자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 a. 사법상의 법인
- b. 지역단체(Gebietskoerperschaft)를 제외한 공법상의 법인
- c. 기업(Gesellschaft)
- d. 개별 회사(Firmen)

공무담임자의 매수행위는 Art. 322ter und 322septies StGB 규정에 따라 최고 5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그리고 사인의 매수행위는 최고 3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사인의 매수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직원이나 협력자(Mitarbeiter)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포함한다.<sup>5)</sup>



5) <http://www.seco.admin.ch/Thmen/00645/00657/00659/01395/index.html?lang=de&sprint-style=yes>.

### III. 결론: 스위스 부패방지법제에 대한 평가

GRECO는 2008년 3월 31일부터 2008년 4월 4일까지 스위스의 부패척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GRECO는 스위스가 부패예방과 척결에 있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다음과 같은 13개 권고(Empfehlung)를 하였다. 그리고 스위스가 이러한 권고를 2009년 10월말까지 전환적용한 보고서가 요청되었다.

GRECO가 스위스에 한 권고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sup>

- 하나의 총체적인 전략을 발전시킬 것
- 사적인 뇌물수수의 추적을 용이하게 할 것
- 행정에서의 개선점: 윤리교육제공 및 부차적 직업(Nebenbeschaeftigung)에서 이해갈등의 명확한 규정
- 경제에서 개선점: 뇌물공여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예컨대, 공적 업무담당에서 제외) 및 판결을 받은 법인에 대한 등록의 도입

2008년 3월 2일에 스위스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sup>7)</sup> 스위스 연방참사회는 GRECO의 권고에

따라 부패척결을 위한 더 많은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부패자문그룹(Konsultativgruppe)을 정규적인 직을 가지는 초부서적인 부패 작업그룹(Interdepartementalen Arbeitsgruppe)으로 확대시키려는 계획이다. 향후 부패 작업그룹에는 칸톤의 대표자들도 속하게 되며, 주요업무는 정보교환과 부패예방 및 척결을 위한 조치들에 협조하는 것이다.

신 옥 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6) <http://www.admin.ch/aktuell/00089/index.html?lang=de&msg-id=19052>.

7) <http://www.admin.ch/aktuell/00089/index.html?lang=de&msg-id=21102>.